

## 인권도시 광주의 문화다양성 현 주소는 어디쯤인가?

홍 성 운(Hong Sung Won)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swhong@gwangju.ac.kr

김 경 례(Kim Kyoung Lyee)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kgr2037@naver.com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 논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차이와 다양성 존중의 실질적 구현은 쉽지 않은 일임. 차이와 다양성을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이자 새로운 미래 사회의 동력이며, 포용사회의 핵심적 가치로 만들어 나가야 함

키워드: 문화다양성, 인권도시, 광주광역시

본 칼럼은 광주문화재단(2019)에서 수행한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요약·정리한 것임

# 1. 문화다양성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 국제 논의의 흐름<sup>1)</sup>

-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서, 추상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UN 및 유네스코의 국제적인 협약과 이행이라는 구체적이고 규정력을 갖는 실천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발전해 왔음
- 문화다양성 개념정립의 논의 과정
  -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문화다양성 논의가 유네스코의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이 시발점인 것으로 상징화되었지만 사실 '선언' 이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선언'내용의 근간이 된 문화다양성 개념정립과 논의과정이 진행되어 왔음
  - 유네스코 헌장(1945):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유네스코 인권선언(1948):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킴
  -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가 다양성 문제는 문화간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개별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내부 집단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네스코에 제출(1952)하면서 '다양성 속의 통합', '차이와 통합'이라는 관점이 형성됨
  -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대한 선언(1966):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전 인류에 속하는 공동유산임을 천명하였고 이는 '세계문화와 자연 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1972)'으로 발전함
  - 일반대중의 문화생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1976): 문화 개념을 확대하여 집단과 개인의 생활양식 및 예술활동 모두에서 문화의 창조성과 그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함
  - 인종과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한 선언(1978): 문화적 차이가 인종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며 각 민족의 차이로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함
  -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유네스코 보고서(1995): 한 문화의 진정한 공헌은 다른 문화와의 차이에 있으며 과거 문화의 보존에만 집중하던 배타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는 것이 국가나 지역, 인류사회의 중요한 발전전략이라는 적극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함
  - 문화다양성 국제네트워크(1999), 문화다양성연대 총회(2001, 2003): 문화다양성의 국제법적 강제력, 법적 구속 필요성이 강조됨
  - 1999년 조직된 유네스코 심포지엄: 문화가 경제적 문제나 개념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1)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 준비단 다양성분과 현장토론회 자료집, 2018:1-3 발췌

문화상품이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과 문화다양성 결의문: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원이자 평화를 유지하는 필수요소임을 강조하고 유엔이 인권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
- 2001년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과 실행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선언은 4개 영역, 12개 조항으로 구성됨. 4개 영역은 ①정체성·다양성·다원주의, ②문화다양성과 인권, ③문화다양성과 창조성, ④문화다양성과 국제연대임. 이를 통해 문화가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되고 문화권이 인권의 기본요소로, 문화상품은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됨.
  - 문화상품은 산업적 가치로만 환원되어서는 아니되고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특수한 상품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임. 또한 선언을 토대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이 추진됨
- 선언과 협약은 미국 주도의 전지구화 및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실적 조건 위에서 문화주권 수호의 일환으로 채택되었음
- 국제 논의 속에서 문화 다양성 개념은 약소국의 문화주권 수호와 소수집단의 권리보호라는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문화 보존을 넘어 문화생산으로, 문화적 텍스트를 넘어 정체성과 삶의 방식 전반으로, 문화제국주의 및 주류문화의 지배·독점, 문화 획일화 및 문화격차에 저항해 문화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보, 기본적인 시민권이자 인권으로서의 문화권 증진이라는 사회적·공공적 가치와 연계되는 형태로 확장됨<sup>2)</sup>

## 국내 논의의 흐름

- 국내에서는 ‘협약’이 체결된 2005년, 한미FTA 협상 시 스크린쿼터 제도와 관련해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보호라는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운동을 전개한 바 있음
  - 하지만 문화다양성 개념이 국가 간 문화산업의 예외성으로 축소 이해되고, 이후 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등으로 핵심안건이 옮겨가는 환경 변화, 한미FTA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제시 실패, 2006년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다문화정책(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제정) 등으로 인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정책 의제가 사라짐
- 2010년 한국 정부가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었으나 4년이 지난 2014년에야 협약의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2) 노시훈 외. 2014. 전남에서 문화다양성 길을 묻다. 전남: 전라남도 문화예술재단.

- 법률에 의거,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게 되었으나 기능의 취약성과 형식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또한 법률이 협약의 내용적 범위 및 실행에 관한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실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sup>3)</sup>
- 그럼에도 협약의 비준국 가입 및 문화다양성법 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이 국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협약 이후 각 분야에 미칠 영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짐.<sup>4)</sup> 미비하지만 협약은 문화 분야의 국제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문화다양성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문화 간 대화 및 교류의 필요성이 제시됨으로써 문화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열린 담론의 장을 마련하였음
- 또한 협약의 비준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시작하였음. 초기의 무지개다리사업은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이 초기에는 이주민 정책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함의함
- 국내의 문화다양성 논의 및 정책은 주로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과 연계해 논의되다가 2014년, '협약'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 법률의 마련 및 시행을 앞두고서 새로운 문화정책 패러다임으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음
- 한국의 문화다양성 논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하며 정책적 대상 면에서 이주민만이 아닌 다양한 소수집단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장해 나갔음
  - 다문화정책이 유입된 외국인 이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한국사회에 적응케 하는 동화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위계와 갈등을 중재하여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임
  - 다문화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으로의 전환은 협약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개념의 모호함과 한계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논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함
  - 협약이 사회적 약자(소수자, 토착민, 여성 등)로서 소수자를 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그 비중이 크지 않으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박애경, 2011:36)<sup>5)</sup>과 개인들의 다양한 문화적 권리보다는 국가와 민족 간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동연, 2006: 83)<sup>6)</sup>이 제기됨
  -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한 사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

3)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 준비단 다양성분과 현장토론회 자료집, 2018:5

4) 국내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김효정(201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방안』, 17면 참조.

5) 박애경. 2011. 『글로벌 문화다양성의 재현 의미: 유네스코 협약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동연. 2006.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자본의 논리』, 『문화과학』 47. 64-89.

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됨(김세훈, 2005:40)<sup>7)</sup>

- 또한 협약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으로 축소되면서, 문화산업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하여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은 이주민 중심의 다문화정책에서 다양한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 다수자와 소수자 간의 문화 교류 증진, 나아가 문화민주주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
- 최근에는 문화다양성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국내외 담론이 활발해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다양성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이자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갈등 및 성별갈등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자원으로 부상함.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세계화와 따른 문화 획일화 현상과 개인, 집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차이가 인정되는 상생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즉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핵심가치로 설정함
- 정부는 문화다양성 협약비준의 후속 조치로 문화다양성 법률뿐만 아니라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과 연계해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문화정책의 주요 기조이자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2017년 문화다양성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으로 「문화비전 2030」을 제시함
  -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개인의 자율성, 문화다양성, 사회의 창의성) 중 하나로 문화다양성이 제시되었으며 문화다양성을 자율성과 창의성의 토대이자 기본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문화 개념을 사회의제 해결 및 사회혁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함
- 지자체 또한 문화다양성 법률에 근거해 2016년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2017.1), 서울특별시(2017.5), 부산광역시(2017.3), 경기도(2017.3), 충청북도(2017.11), 제주특별자치도(2017.6), 서울특별시 강북구(2018.1), 서울특별시 구로구(2017.11), 전라북도 익산시(2017.11), 전라남도 목포시(2017.2), 총 11개의 지자체 및 자치구에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경기도 교육청(2017.6), 경상남도 교육청(2017.12), 2곳의 교육청이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2018년 기준) 향후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
- 하지만 실질적인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 제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 구축, 문화다양성 사업의 추진 및 평가체계 마련,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정책방향의 전환과 활동증진 지원 등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음

7) 김세훈. 2006.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5-41.

## 2.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일까?

### 국제·국내 논의를 통해 본 문화다양성 가치와 실천원칙

- 문화다양성은 공동체의 생존 및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핵심가치로서 개인의 인권 및 자유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함
  -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존중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은 인권존중과 직결되며 국적, 민족, 인종, 나이,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소득수준이나 직업, 지역, 언어 등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소통, 이해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자 기반이 되는 것을 지향함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은 모든 문화들의 평등한 존엄 및 존중을 전제로 하며 문화다양성이 개인들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적극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자율성과 창조성의 조건이자 토대이며, 자율성과 창조성을 통해 보다 증대됨.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만의 문화적 표현들을 창조, 생산, 전파, 유통, 접근, 향유하도록 촉진시켜야 하며 특히 여성 및 다양한 소수집단들의 특수한 상황 및 욕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 문화다양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민주주의를 통해서 유지, 발전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정책에 대한 접근 및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 및 문화의 표현 및 전파 수단들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공평한 접근권 및 평등은 소수자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개방성을 원칙으로 하며 그 참여와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 유엔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 및 정책을 채택할 주권을 가지며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인식 증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국제조직 및 지역단위 조직들과 협력해야 함
- 문화적 내용의 창조, 생산, 유통, 전파에 대한 기술적 변화의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기술변화 및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함. 디지털 격차에 대응해야 하고 오프라인에서의 권리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보호되어야 함

### 법률에 명시된 문화다양성 개념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년)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음

### 3.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실태와 정책 방향

#### 문화다양성 실태: 문화다양성 인식과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포용이 부족한 상황임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0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일반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76.1%)는 높은 수준이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도 매우 낮다고 평가함
  -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을 묻는 설문에 대해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 25.5%,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의 충분’ 17.3%,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14.8%, ‘소수자들의 권익보장’ 11.0%,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인식되지 않는다’ 10.3%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함<sup>8)</sup>
  - 특히 사회구성원에 대한 거리감과 차별 정도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62.8%, ‘외국인근로자’ 42.9%, ‘북한이탈주민’ 41.9%, ‘결혼이주민’ 21.9% 순으로 나타남
- UN 차원의 외부 평가에서도 한국의 문화다양성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만큼 문화다양성을 다양한 문화 정도로 이해하고, 정책 차원에서는 사회적 약자, 특히 이주민을 위한 문화정책 등으로 인식하는 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은 초기에는 이주민 유입 증가에 따른 다문화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점차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장애, 소수인종, 여성, 성적 소수자 등)의 문화적 보호와 증진 정책으로 확장됨
  - 국내의 다문화정책은 소수자를 공존과 상생의 대상이기 보다는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소수자의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소수자 문화를 주류사회로 편입시키거나 동화시키는 지원정책(동화정책)이 중심이 되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문화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8) 문화체육관광부(2017.1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 문화다양성 정책은 차이와 다양성을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이자 새로운 미래 사회의 동력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기존 문화정책과 달리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표현과 삶의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도 보편적 공동체 의식 및 상호 공생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함

#### 4. 다른 나라는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가?

-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이주민 및 소수민족들 간의 갈등 조정과 사회통합 목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도입
  -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이주민 및 소수민족들 간의 갈등 조정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주의 및 문화다양성 정책을 도입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평등, 인권,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연동
  -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과 성격은 평등, 인권,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연동되어 있으며, 소수자집단별 특성과 제약요인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정책마련과 시행과정에서 정책대상을 객체화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개방적인 전달체계를 지향함
  - 또한 각 국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한 정책추진체계와 사업을 마련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사업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설정함
- 당면한 정책 과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의 민족통합, 프랑스의 경우 매체에서의 차별 금지, 캐나다의 경우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사회통합, 네덜란드의 경우 성적 소수자의 권리 증진, 스웨덴의 경우 성 평등의 정책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함
-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
  -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네트워크와 협치 체계가 구축되어 지역 내 민간자원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역량 등이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사업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 다양한 국내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문화(다양성)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및 문화다양성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 관련 미디어콘텐츠 육성, 매체종사자들의 다문화 증진 교육 및 소수집단 미디어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5.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추진 현황

-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문화다양성 가치와 연관된 다른 부처에서도 다양하게 시행
  - 중앙부처 중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많은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기본권 신장', '국제문화교류', '가치확산',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개발', '정책추진체계 구축' 순으로 정책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은 '문화기본권 신장'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 '국제문화교류' 순
  -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시가 가장 많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울산시 순이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함
  - 대상별로 청소년 대상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다문화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았던 반면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성소수자 대상 사업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은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문화기본권 신장 영역에서의 사업 증가가 두드러짐

| 표 1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사업

연도	문화기본권 신장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국제문화교류
2016년	786	334	238	121
2017년	1,139	418	347	227

## 6.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현주소는 어떠한가?

### 다문화이주민

- 다문화정책의 대상은 결혼이주민(특히 이주여성)과 귀화자 중심
  - '내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과 문화수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의 범주 확대가 필요하며,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는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범주가 확

대되어야 함

-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3,454명, 광산구가 가장 많음
  - 국내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은 2017년 12월 현재 153,649명이며,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3,454명이며,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1,429명, 북구 946명, 서구 491명, 남구 416명, 동구 172명 순으로 분포함
  - 국내 등록외국인은 2017년 12월 현재 1,171,762명이며, 광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279명이며,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12,154명, 북구 4,752명, 서구 1,634명, 남구 1,401명, 동구 1,338명 순으로 분포함
  - 연령별로는 20대가 9,006명으로 가장 많고,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 취업(E-9)자가 4,412명으로 가장 많음
-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은 3,040명, 부모 출신국은 베트남이 가장 많음
  - 2018년 4월 기준 국내 초중고 다문화학생은 122,212명이며 광주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은 3,040명(남학생 1,568명, 여학생 1,472명), 부모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925명), 중국 및 필리핀(각 497명), 중앙아시아(263명), 일본(188명), 중국(한국계)(178명) 등의 순으로 분포함
- 다문화이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이 가장 필요함
  - 광주시민의 '다문화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9)를 살펴보면, 다문화이주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관계(3.36점), 직장동료(3.34점), 알고 지내는 사이(3.33점), 가족관계(3.13점) 순으로 나타났다
  - 알고 지내는 사이, 이웃관계, 직장동료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용 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가족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
  -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국내 이주민 정책은 인종문제와 민족문제를 아우르는 범위로 확장되었음
  -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생계지원이며, 문화생활지원에 대한 요구 및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제한적인 문화예술 향유함
- 광주에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14명으로 전국 29,645명 대비 2.1%

9)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016)

- 2018년 9월 현재까지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총 32,147명(남 9,104명, 여 23,043명)이며, 여성 비율이 72%이며 광주에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14명(남자 141명, 여자 473명)으로 거주가 확인된 전국 29,645명 대비 2.1%를 차지함
-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이 가장 필요
  - 광주시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가 3.2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3.21점), 이웃관계(3.20점), 직장동료(3.19점), 가족관계(2.99점) 순으로 나타났음.
  - 알고 지내는 사이, 이웃관계, 직장동료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용 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가족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는 다문화 이주민보다도 낮게 나타남

## 여성

- 여성이 차지하는 임금, 취업 형태 등 사회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음
  - 여성의 사회적 지위 불평등은 여성 취업자 임금, 여성 임원 비율 등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 내 의사결정권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함
  -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 혹은 무보수 노동으로 간주해온 사회통념은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시장노동에 참여한 취업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
- 광주의 여성 인구는 737,630명으로 남성보다 2%p 많음
  - 광주의 인구는 1,461,009명이며, 여성 인구는 737,630명으로 남성보다 2%p 많으며, 자치구별은 북구(221,792명), 광산구(201,141명), 서구(154,867명), 남구(112,197명), 동구(47,633명) 순으로 많이 분포함
  - 2017년 기준 광주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6%를 기록하여, 남성(70.5%)보다 18.9%p 낮게 나타났으며, 고용률 역시 남성 68.3%, 여성 50.3%로 나타나 여전히 성별 격차가 드러남

## 성소수자

- 성소수자는 성정체성, 성적취향에 기초한 다수의 집단과 구별
  - 성적취향에 기초하여 다수의 집단과 구별되며, 소수자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조항 간 불일치 등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음

- 문화다양성 측면에서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의 노력이 중요함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잘못된 정보 전달 등으로 인한 혐오감 증폭과 적대감이 증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문화다양성 차원의 교육과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소수자 문화 보호가 절실함
  - 최근 성소수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운동으로 인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나 여전히 법제도 측면, 사회적 수용성 및 성소수자 문화에 대한 인식은 낮음
- 성정체성의 판단이 오직 당사자에게만 달려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구 통계를 정확히 측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
-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임
  - 광주시민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 이웃관계(1.88점), 성소수자 문화에 술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1.86점), 알고 지내는 사이(1.86점), 직장동료(1.85점), 가족관계(1.57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모든 항목에서 2점미만으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며, 특히 가족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더욱 떨어짐

## 장애인

- 장애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장애인 복지 수요 발생 및 욕구의 다양화
  - 장애인의 전 장애유형과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생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들이 집단적 소수자로서 문화적 표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함
- 한국사회에서 장애가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환경의 문제에 기인함
- 광주 등록장애인은 69,233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의 약 4.7%임
  - 2017년 12월 기준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은 69,23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7%를 차지하며, 등록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은 30,290명(43.8%)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6급(17,818명), 5급(13,832명), 3급(12,037명), 4급(10,1889명), 2급(9,443명), 1급(5,914명) 순으로 분포하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31,60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각(7,290명), 청각(9,095명), 뇌병변(6,875명), 지적(6,418명), 정신(3,006명), 신장(2,160명), 자폐성(748명) 등의 순으로 분포함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이 가장 필요함
  - 광주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가 3.4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관계(3.41점), 직장동료(3.40점),

- 알고 지내는 사이(3.39점), 가족관계(3.09점)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알고 지내는 사이, 이웃관계, 직장동료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용 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가족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7. 광주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 문화다양성은 인권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 민주·인권의 도시이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인 광주의 문화정책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문화다양성은 광주시 도시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정책이자 시정 전반의 가치와 철학이 되어야 하며, 광주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를 보는 기본원리이자 포용국가를 위한 가치로서 이해되어야 함

###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 광주광역시 역시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문화기본권신장'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정책개발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하지만 문화다양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기본권신장 사업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공공기관, 학교에서부터 실시함으로써 교육과 홍보를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함
  -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보급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식 확산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공공·민간 인력 대상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한 광주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 광주광역시는 문화다양성 정책추진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및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며 국제적 문화 교류라는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정책추진체계 구축 사업으로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었으며 '정울성음악축제', '유네스코 세계인권기록 국제학술회의', '미얀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등 국제적으로 문화 교류가 활발히 추진하였음

- 광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조례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 증진 예산 수립, '공무원교육원 문화다양성교육과정 운영'등을 운영함
-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에 소수자 참여가 미흡
  -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전문가, 문화예술인, 행정 중심의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과 소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다양성 예산규모가 적음
  - 타 광역시와 비교한 결과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문화다양성 예산규모(2017년 기준)가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낮음

## 문화다양성 정책 제언

- 중앙정부 위주의 문화다양성 사업에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체계 구축 필요
  - 2012년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사업으로 광주시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무지개다리사업 이외에 전담인력이나 팀 구성, 자체예산 배정,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이 미흡한 실정임
  -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광주의 실정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야 함
-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다양성)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제5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영향평가를 수립함으로써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확산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문화(다양성)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광주시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나 문화경관의 파괴, 공동체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역량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 필요
  - 2018년 11월 광주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대한 반대와 편견이 심하게 표출된 것처럼 사회적 소수자와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음
  - 다문화이주민과 그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차별적인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비하하는 심리적 차별이 자리 잡고 있음

- 공공기관과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문화적 차별행위(문화다양성 침해사례)가 이뤄지고 있는 지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제도(문화영향평가 등)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수 문화예술,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독립문화예술 및 다원문화예술 지원 확대 필요: 비주류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사업이 그동안 지역어와 지역전통문화 및 문화재 사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음
  - 다문화이주민, 여성, 장애인, 청년 등과 더불어 국내거주 동포(예: 고려인 마을), 문화적 소외계층 등의 문화적 표현권 확대 및 다수자 간의 문화교류를 위해 보다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광주시, 자치구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문화의 발굴과 향유 그리고 사업화
  - 지역 내 민간자원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역량 등이 정책의 실행성 높이는 시너지를 발산함
  - 광주의 자치구의 전통문화 가치 연계된 대표 프로그램 발굴 및 사업화, 지역 마을공동체 민속잔치 및 마을 잔치 활성화(마을공동체 문화 재현), 전통예술의 대중화·현대화를 위한 창작 활성화 도모함
  -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상호문화이해·문화수용을 위한 관광교류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문화권을 배려하는 관광서비스·관광안내·관광인프라 보완,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축제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하고 확대함